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2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상훈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기대, 김인제, 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 문장길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,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실행계획에 따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,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,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나.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.)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,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,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.)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기존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“대안교육기관”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대안교육"이란 <u>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대안교육기관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<u>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)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.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<u>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 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"대안교육"이란 <u>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대안교육기관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<u>아니하고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,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,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)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.)을 <u>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<u>기존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"대안교육기관"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.</u></p>